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32 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조승환·강민국·이성권

곽규택 · 김태호 · 김종양

권영세 · 안철수 · 권영진

유용원 · 임이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,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·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·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(안 제1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민등록 증, 운전면허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 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(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발급할 수 있다.
 -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·이용·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·이용·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·이용·폐기, 안전성 확보조치 및 운영기반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(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발급할수 있다.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이 안전성과 신뢰성을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·이용·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정된 사항 이외에 모바일신분 증의 발급·이용·폐기, 안전성 확보조치 및 운영기반 구축·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